

# 청 약 철회 신 청 안 내

## ■ 청약철회권(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)

-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

### □ 적용 대상 및 해당 금융상품

- 적용 대상 :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\*
  - \* 개인, 개인사업자, 5인 미만 법인,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
- 철회 가능 금융상품 : 카드론 및 대출상품
- 철회 불가능 금융상품\* : 신용카드·시설대여·할부금융·연불판매
  - \* 다만,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가능

### □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

-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
-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제공일보다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 
(or) 대출 익일부터 14일 이내
- 청약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·이자\* 및 부대비용\*\* 상환 필요
  - \*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 
or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익일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 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
  - \*\*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

### □ 신청 방법

-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신청서 작성)
- ※ 우편 발송 시에는 신청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함

### □ 처리 프로세스

- ① (일반금융소비자) 신청서 제출 → ② (준법감시팀) 신청서 접수 및 처리회신 → ③ (일반금융소비자) 처리결과 조회
- ※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대출원금·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
- ※ 당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 철회 신청 시, 신규 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

### □ 행사 효과

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- 5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, 신용정보원, CB사 등에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 삭제

# 청 약 철회 신 청 서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약 철회를 신청합니다.

## 1 신청인 정보

고객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
연락처	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폰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번호	
E-mail			

## 2 신청 내용

철회 금융상품	
---------	--

♣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 \_\_\_\_ 년 \_\_\_\_ 월 \_\_\_\_ 일

계약자 : (서명/인)

대리인 : (서명/인)